



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공포 안내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대통령령 제33609호(2023.06.30.)로 일부 개정·공포된 「지방세법 시행령」의 일부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3. 본 내용은 우리 조합 웹사이트(www.scra.or.kr)「정보마당-법령정보」에서도 확인 가능하며, 개정법률 전문은 법제처 웹사이트(www.moleg.go.kr)에서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□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- 신뢰할 수 있는 거래관계 등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·판결·공매·경매 등에 의한 차량·기계장비 취득 시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산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
[2023년 1월 1일 이후 차량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]

* 우리 조합에서는 행안부 및 서울시에 개선 건의(2023.04.07.)

※ 붙임 : 개정안 신·구 조문대비표(발체). “끝”

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이사장



수신자 회원사 232개사

담당 박종우	부장 김진석	실장 박상광	상무 성정현	이사장 배준영
시행 서자대조 23-1008 (2023.06.30.) 접수 - ()				
우 06664 서울 서초구 방배로22길 18, 4층 (방배동, 카렌탈비즈니스센터) / www.scra.or.kr				
전화 (02) 525-9082 전송 (02) 525-9063/ 이메일 scra@scra.or.kr / 공개				

신·구조문대비표(발췌)

현행	개정안
제18조의3(차량 등의 취득가격) ① 법 제10조의5제2항에서 “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여 그 사실상취득가격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천재지변, 화재, 교통사고 등으로 중고 차량이나 중고 기계장비의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. <신 설>	제18조의3(차량 등의 취득가격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----- ----- ----- -----. 1. 천재지변, 화재, 교통사고 등으로 중고 차량이나 중고 기계장비의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것으로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3. 수입으로 취득하는 경우 4.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확정 판결(화해·포기·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)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 5. <u>법인장부(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서 또는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따라 법인이 작성한 원장·보조장·출납전표 또는 결산서를 말한다)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</u> 6.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

②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취득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(이하 "취득당시가액"이라 한다)은 사실상취득가액으로 한다. <u><단서 신설></u>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, 다만, 제1항제5호에 따른 중고 차량 또는 중고 기계장비로서 그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(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)에는 해당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.
--	---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취득당시가액에 관한 적용례)
제18조의3 제1항 각 호 및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